

## 한국원자력학회

우)305-308 대전제 유성구 유성대로 794(장대동 342-1, 뉴토피아빌딩 4층) 전화 042) 826-2677 전송 042) 826-2617

담당자: 민현정 실장 kns2613@kns.org www.kns.org

한원회 제2023-70호

시행일자: 2023.04.20.

수 신: 정회원

제 목: 한국원자력학회 임시총회 개최 알림

\_\_\_\_\_

- 1. 회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- 2. 현재 우리 학회에서는 제35대 수석부회장 보궐선거, 제36대 수석부회장 선거 그리고 제36대 임원 임기-회기일치 관련 정관 개정(안)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,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임시총회는 서면으로 진행되며, 심의 기간 중에 회신을 부탁드리고,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개최일시 : 2023.04.27.(목)

나. 개최형태 : 온라인 시스템 (이메일을 통한 안건 송부 및 회신)

다. 서면심의 기간 : 2023.04.27.(목) ~ 05.08.(월) 17:00까지

라. 안건내용:

1) (보고안건) : 제35대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추진현황

2) (의결안건) : 정관 개정(안) 승인 건

## <관련조문> 정관

제18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**정관 변경**에 관한 사항

제19조 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- 제20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2020. 11. 10. 개정)
- ②회장은 인터넷 장치를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(2020. 11. 10. 신설)
- ③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2020, 11, 10, 신설)

제50조 (정관 변경)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**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**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

